

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남부 스마트 시티
마스터 플랜 및 예비타당성 조사

과 업 지 시 서

2021. 07.

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

목 차

I. 과업지시서.....	1
1. 개요.....	1
2. 과업기간.....	2
3. 과업내용.....	2
4. 과업의 일반원칙.....	7
5. 과업수행 방법.....	10
6. 과업성과품 제출.....	11
7. 보안대책.....	13

I. 과업지시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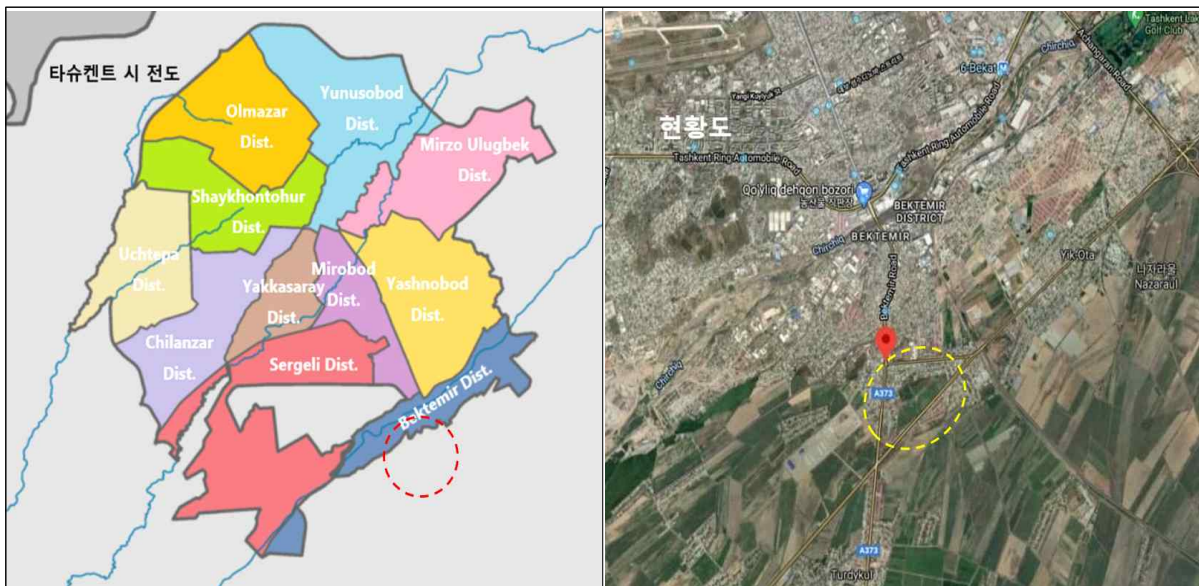
1. 개 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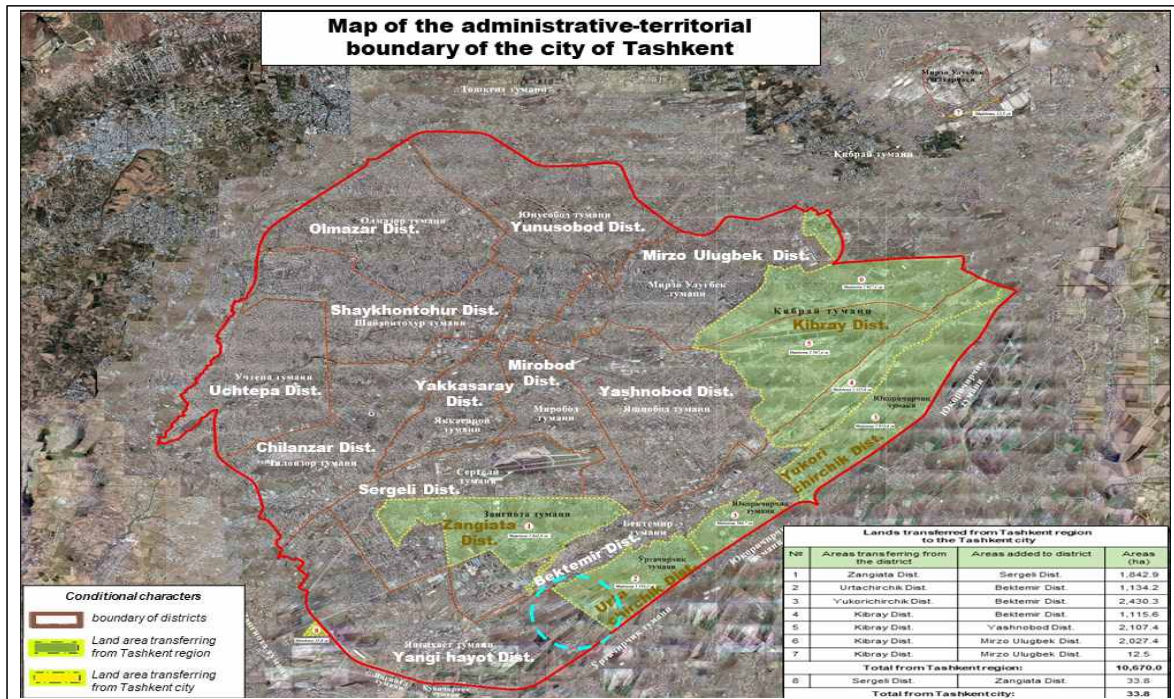
□ 과업명 :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남부 스마트 시티 마스터 플랜 및 예비타당성 조사

□ 과업 목적

○ 배경

- 타슈켄트시는 2019년 1월 기준 인구가 242만 명으로 우즈베키스탄 뿐만 아니라 중앙아시아 전체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도시로 인구 증가에 따라 양질의 주택 공급 및 기반 시설 확충을 위해 많은 도시 개발 관련 계획이 수립되고 있음
- 타슈켄트 시 인구 증가에 대응하고 행정 체계를 효율화 하기 위해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2020년 8월 타슈켄트 시와 타슈켄트 주의 경계를 조정하여 타슈켄트 시를 확장하기로 결정하였음
- 타슈켄트 시 남부 지역에 양기 하웃이라는 새로운 區(district)를 설치하고, 신설된 양기 하웃 區와 베크테미르 區 일부 지역(약 400ha 규모)을 대상으로 스마트 시티(이하 「타슈켄트 남부 스마트 시티」)를 건설하려는 계획을 수립함





○ 과업 목적

-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한국의 K-City Network 프로그램을 통해 타슈켄트 남부 스마트 시티에 대한 마스터 플랜 수립 및 예비타당성 조사를 요청하였음

- 본 과업은 한국의 스마트 시티 노하우를 전하고, 한국 기업에 투자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,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목표로 하는 스마트 시티 건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술적, 재정적, 법 제도적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음

※ 과업수행자는 과업착수 후 우즈베키스탄 정부와의 사전 협의를 통해 과업의 구체적인 범위 및 세부사항을 협의하고 반영하여야 함

※ 과업수행자는 우즈베키스탄 정부 및 현지 기관,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협업하여야 하고, 필요 시 사안별로 전문기관에 하도급 등을 시행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발주자의 승인을 득해야 함

※ 기재부 EIPP(경제혁신파트너십프로그램)에서 추진하는 우즈베키스탄 스마트시티 관련 연구내용을 참고하고 협업하여야 함

2. 과업기간 : 계약일로부터 240일

3. 과업 내용

1) 스마트 시티 사례 분석 및 현지 지역 특성/개발여건 현황 분석

□ 기존 사례 분석 및 우즈베키스탄의 스마트 시티(도시 개발) 계획 현황

- 국내외 스마트 시티 조성 사례 및 정책 이슈 분석
- 우즈베키스탄 내 스마트 시티 건설(도시 개발) 계획 및 현재 진행 상황
 - 타슈켄트 市 및 타슈켄트 州를 중심으로

□ 타슈켄트 市 지역적 특성 및 개발 여건 분석

- 타슈켄트 市 일반현황 조사
 - 인구, 가구 수 등 사회경제지표 조사
 - 자연환경, 사회·경제·문화·환경 현황조사 등
 - 도로, 통신, 전력 등 도시 기본 인프라 현황 분석
 - 지역의 도시 여건, 교통 체계, 개별 현황, 개발 관련 주요 이슈
- 경제·사회적 여건 조사
 - 산업·경제·인구 구조 변화 추세를 분석
 - 도시 개발에 따른 사회, 환경, 경제 영향 분석
 - 부동산 경기변동 추이 분석/ 경제 산업 인구 등 수요예측을 위한 조사
- 관련 계획 및 법령 분석
 - 「타슈켄트 도시계획 2041」, 「2030년까지의 도시화 계획」 등 관련 상위

계획 검토

- 혁신개발부, 건설부, 타슈켄트 시청 등 유관 부처(기관) 간 업무 분장 분석
- 도시 개발 및 주택개발 등 관련 법령 조사 분석
- 타슈켄트 市 부동산 시장 분석
 - 토지 및 주택 거래가격/임대료 조사
 - 기 공급된 토지 및 주택 현황 조사 및 비교
 - 용도별(주거, 상업, 오피스) 토지 수요 추정
 - 부동산 시장 동향 및 분석/전망
 - 경쟁 사업 유무 및 경쟁력 비교
 - 유사 외국기업 도시 개발(부동산 개발) 사례 조사
- 외국인 투자개발 시행 관련 법제 분석
 - 외국인의 투자에 대한 조건, 권한, 제약사항, 시행자 관점 관련 법제 분석
 - 외국인투자법, 관련 제도(정부 고시) 분석
 - 국/내외 과소자본세제, 외환, 차입규제 등 자본구조 제약조건 분석
 - 투자형태(PPP/BTL/BOT 등)에 따른 외국기업 인센티브, 세제 등 법제 분석
- 외국인의 토지권리 확보 관련 법제 분석
 - 외국인의 토지사용권 취득 절차, 조건 등 검토
 - 개발단계의 토지사용권 취득, 운영단계의 토지사용권 임대 조사
 - 토지 용도변경 조건, 최소 개발필지 규모 및 절차 분석
 - 원활한 사업시행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 분석
- 관련 기관 및 이해 관계자 면담 및 의견 청취
(출장 불가 시 현지 주재원, 협력기관(외주업체 등)를 통해 실시해야 함)
- 현황종합분석
 - 사업대상지 현황 및 개발여건 분석을 바탕으로 SWOT 분석 등을 실시

2) 타슈켄트 남부 스마트 시티 마스터 플랜 수립

□ 개발 조건 검토

- 사업 부지 및 주변 지역 현황 분석
 - 사업 부지 현황 조사
 - 인근 하천 조사
 - 주변 지역 인프라 조사

□ 개발 방향 수립

- 개발목표 설정 및 전략 수립
 - 대상 지역의 개발 잠재력 및 경제적, 환경적, 공간 계획적 측면을 고려한 개발 목표 및 전략 수립
- 도입기능 및 계획 지표 설정
 - 여건 분석을 바탕으로 차별화되고 지역의 장기적 발전 방향에 부합되는 도입 기능 및 시설을 제시
- 공간구조구상 및 대안 설정
 - 인구와 산업 등 관련 지표를 감안하여 미래 지향적 공간구조가 형성될 수 있도록 개발축, 교통축, 녹지축 등과 상호 연관 관계를 고려하여 공간구조 구상 및 대안 설정

□ 마스터 플랜(Masterplan)

- 토지이용계획
 - 사업 대상지의 물리적, 지리적, 역사, 문화적 지역 특성을 계획에 반영
 - 지속 가능한 개발과 자연환경 보존과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계획
 - 도시기반시설의 설치 및 관리비용이 최소화되도록 효율적인 계획 수립
- 공간 구상
 - 인구 및 개발밀도, 용도 배분계획 구상
- 교통계획 구상
 - 간선 교통망과 주변 지역을 연결하는 광역교통망, 사업지구 내부의 지역

교통망 등을 고려하여 교통계획 수립

○ 공급처리시설 계획 구상

- 상수, 오수, 우수 및 전력 등에 대하여 상위계획과 인접 도시기반시설 등을 고려, 합리적이고 경제적으로 계획

○ 공원·녹지계획 구상

- 주민 이용 및 접근과 공원, 녹지, 습지 등 기존 자연 현황을 고려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계획 수립

○ 도시계획기준에 따른 시설별(주거, 상업, 업무, 공공 등) 도시설계기준

○ 개략 공사비 산정

- 개략 공사비 산정
- 민간 투자 부분과 정부 지원 부분(인프라)의 구분

○ 마스터 플랜 도식화

○ 사업 시행을 위한 로드맵 작성

□ 스마트 시티 개발 전략 수립

○ 도입기능 및 시설을 고려한 스마트 시티 개발 전략 제안

- 우즈벡 내각령 「스마트 시티 기술 이행을 위한 컨셉(2019. 1월)」에 기반하여 도입하고자 하는 주요 스마트 기술 제안
- 한국의 스마트 도시 기술을 활용하여 도시 개발 및 도시관리 분야 적용 방안을 제시

*스마트시티, 스마트 교통, 스마트 에너지시스템, 상수도, 하수도, 스마트빌딩, 스마트 하우스, 스마트 공용 서비스, 기타 디지털인프라 등

*오픈데이터 활용, 디지털 기술 발전 전략

□ 스마트 솔루션 적용 방안 검토

○ 스마트 시티 솔루션 적용방안 검토(대중교통, 수질오염 및 폐기물 처리 등

환경 이슈, 방법/보안, 에너지 등)

- 스마트 시티 추진 SWOT 분석
- 스마트 시티 서비스 우선순위 도출 및 서비스 모델 기본 구상
- 도출된 스마트 시티 서비스의 개요, 주요기능, 구성체계, 이용대상, 제공범위 정의
- 스마트 시티 서비스 단계별 추진계획 제시
- 스마트 시티 기반시설 구축, 운영, 연계 방안 및 유지관리 방안 제안
 - 스마트 시티 서비스 기술적 운영방안 및 시스템 구성, 세부기능 정의 등 실행방안
 - 정보통신망 현황 분석 및 네트워크 통합 구축방안 제시
 - 기존 서비스와 연계방안 검토(호환성, 연계성, 확장성 등)
 - 적용 서비스 도입 효과 및 개략 구축비용 산정
 - 데이터 생성, 저장, 분석, 활용 등 방안
- 표준 플랫폼 동향 및 적용방안 제시
- 스마트 시티 추진을 위한 조직/역할/제도/거버넌스 및 이해관계자간 상호 협력방안에 대한 제안
- 스마트 시티 운영 관리 방안 제안, 비용 제시

3) 타슈켄트 남부 스마트 시티 예비타당성 분석

□ 사업구조 수립

- 우즈베키스탄 정부의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인센티브 현황
- 본 사업 수행을 위한 최적의 사업구조 제시(우즈벡 정부 참여 제안 등)

□ 기술 타당성 검토

- 도시개발 법제도, 공급 인프라, 공사비, 스마트시티 적용성

□ 재무 타당성 검토

- 단계별 개발, 적정 토지가, 수요조사·분석, 적정 분양가 산정
- 예비 타당성조사 결과를 반영한 재무모델 작성(수정 가능한 raw file 형태로 제출)
- 수익성 지표 재무 분석, 민감도 및 시나리오 분석

□ 재원조달계획 수립

- 타슈켄트 인근 도시개발 사업 재원 조달 사례 검토(Tashkent City project 등)
- 자기자본 투입계획, 타인자본 조달계획, 분양수입을 활용한 사업비 조달계획 수립
- MDB, ECA 등 정책금융 및 상업 은행 조달 가능성 및 조달방안 검토
- 적정 토지 분양가 및 임대료 검토
- 환율변동 및 환전 리스크 헷지 방안 검토

□ 사업위험 분석 (Risk Analysis)

- 잠재 Risk 도출 및 Risk Matrix 작성
- 도출된 Risk의 Mitigation Plan 수립

□ 사업추진전략 수립

- 성공적이고 조속한 스마트 시티 프로젝트 추진을 위하여 사업 추진 주체 및 사업 구도에 관한 기본방향을 제시
 - 우즈베키스탄 정부 및 외국인 투자자 간의 역할 분담을 중심으로 기본방향 제시
- 스마트 시티 프로젝트 관련 이해 관계자 파악을 통한 협의 관련 기관 및 사업 인허가 절차 검토
- 한국 기업의 스마트 시티 연관 사업화를 고려하여 종합적인 사업 추진 전략 수립
 - 도식화 병기

4) 사업국 관계자 역량강화활동

□ 사업관계자 및 공무원 초청연수 실시

- 우즈베키스탄 스마트시티 관계자 및 공무원 등 실무급을 대상으로 역량강화 교육, 경험공유, 현장방문 등을 실시
- 중간보고회와 연계하여 수행

□ 현지 워크숍 개최 (1회 이상)

- 과업성과의 제고 및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현지 기관 등의 관계자를 포함하여 진행
- 국내외 관련 사례 및 경험 등을 제시하여 관계자 역량강화 도모
- 성과의 중간보고, 최종보고 또는 초청연수시 병행하여 진행 가능

※ 역량강화의 경우, COVID-19 등 상황으로 현지 출장이 어려울 경우, 감독관 및 현지정부와 협의하여 온라인 등 적정 대안으로 대체 가능

4. 과업의 일반원칙

□ 자료 활용

- 시장조사와 관계문헌은 국내 기존자료는 물론 외국의 자료를 충분히 수집하여 활용하여야 하며, 통계 등을 반영할 경우 공신력 있는 기관의 자료를 활용하여야 함
- 본 과업수행을 위해 공공기관, 전문연구기관의 보고서, 각종 행정통계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출처를 명시해야 함

□ 과업수행원칙

- 최종낙찰자(이하 ‘과업수행자’)는 과업수행 상의 주요사항과 본 지침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감독관과 사전에 협의하여 수행해야 함
- 본 과업수행 시 세부 추진 일정 및 자료협조 등 관련 기관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관과 사전에 협의하여 수행해야 함
- 본 과업의 수행상 시장조사, 법률, 기술, 수요 등 외부전문기관에 위탁하여 과업을 수행할 경우 위탁범위 및 내용, 위탁금액, 위탁의 필요성, 수탁자 선정의 적정성 등을 명시하여 우리 공사의 승인을 받아 시행해야 함
- 외부업무위탁을 수행하는 기관을 포함하여 과업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안전사고의 책임 및 행정적·기술적 제비용과 문제처리는 과업수행자(계약상대자, 외부전문기관 포함)가 부담해야 함
- 과업수행자는 수행연구자별 세부 업무범위 등을 정하여 우리 공사와 협의를 통해 최종확정하여야 함

□ 과업의 변경

- 계약 후 과업지시서 및 설계예산내역서의 내용은 계약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으며, 과업수행 중 여건변화, 과업 내용의 추가 등으로 우리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과업 범위 및 내용 등을 변경할 수 있음
- 본 과업에 대하여 부득이한 사유로 과업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을 때는

우리 공사의 사전승인을 받아 연장할 수 있음

- 기타 과업지시서 및 설계예산내역서의 해석상 의문이나 문제가 있을 때는 당사자가 협의하기로 하며 협의가 안 될 시에는 관련 규정에 따름

□ 일반조건

- 과업진행에 대하여 우리 공사의 설명요구가 있을 때는 과업책임자와 책임연구원이 참석하여 과업내용을 설명하고 우리 공사의 수정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함
- 각 부문별 과업 항목은 각 세부항목별로 수행일정 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승인을 받고 계획에 따라 추진해야 함
- 본 과업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제반자료와 정보에 대하여는 과업수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임의로 사용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, 임의유출에 대한 손해배상 등의 제반책임은 과업수행자가 짐
- 과업수행 상 경비는 계약된 범위 내에서 사용하고 초과 사용하는 경우 과업수행자가 부담하며, 사용내역에 대한 집행근거(영수증 등)는 준공 시 제출하여 부당하게 지출되었다고 판단할 경우 그 금액에 대하여서는 사후에 감액 또는 환수할 수 있음
- 기타 과업의 일반지침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르되 주요사항은 우리 공사의 지시에 따라야 함

□ 특별조건

- 본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였을 경우 모든 책임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하며, 과업수행의 성과품은 우리 공사가 소유함
- 사전승인을 득한 연구인력으로 과업을 수행하며, 변경할 경우, 기존 인력보다 업무수행역량이 높은 자로 한정하며, 우리 공사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

□ 성과물 작성

- 사용되는 용어는 국문 및 영문으로 통일성 있게 작성하며, 전문용어는 () 안에 한자 또는 영문으로 표기하며, 교육부제정 한글맞춤법 및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야 함
- 작성된 최종보고서 원안은 우리 공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, 이에 필요한 자료제출 및 보충설명의 요구가 있을 때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, 그 결과 성과품이 과업지시서 내용과 상이 또는 미흡하여 우리 공사에서 보완을 요구할 경우에는 즉시 보완하여 계약기간 내에 인쇄·납품해야 함
- 성과품에 대한 작성방법, 양식, 활자크기, 지질 및 표지색 등에 대해서는 감독관과 협의·결정해야 함
- 공정보고, 현지조사, 착수보고, 중간보고, 최종보고 등 과업수행자가 감독관에게 제출하는 모든 보고 및 관련자료는 서면과 전자파일로 제출해야 함

□ 기 타

- 과업수행자는 우리 공사가 과업지시서의 범위 내에서 세부적으로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 이를 준수해야 함
- 용역성과보고서 등 관련문서는 보안관련 제 규정을 준수하여 사전에 보안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야 함
- 과업수행자는 과업의 수행 중 발생한 각종 자료와 성과품을 용역 준공 시에 전부 납품하여야 하며, 성과품은 우리 공사의 승인 없이는 추가로 인쇄할 수 없음

5. 과업수행 방법

□ 전문가 자문

- 본 과업내용 관련 기관의 실무책임자 또는 외부전문가 중에서 선정하여 중간보고서 제출 전, 최종보고서 제출 전 등 2회 이상 자문계획(자문회의, 토론회, 워크숍 등)을 수립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고 실시하여야 함

□ 현지조사

- 사업대상국의 인문, 자연, 경제, 법률 및 사업환경 조사 등 내실 있는 과업수행을 위해 사업대상국 현지 조사를 실시해야 함
- 과업수행자는 조사지역 및 일정, 조사자(과업책임자 및 참여연구원, 위탁 외부전문기관 포함) 등 해외조사계획을 감독관의 사전 승인을 받고 실시함
- 과업수행자는 해외조사 종료 후 7일 이내에 조사 관련 활동 내역 등 조사결과를 보고하여야 함
 - * COVID-19 등 불가피한 사유로 현지 출장 조사가 어려울 시, 감독관과 협의하여 현지 업체 활용 등 대안 시행

□ 상대국 실무협의

- 대표사가 회의(온라인 포함) 개최 주관
- 업무추진 관련 e-mail 실무협의
- 현지 Contact point 운영(수행사 내 현지 인력 있을 시)
 - * 필요시 우리공사 또는 국토부의 상대국향 협의 공문 발송 요청

□ 통역 제공

- 필요시 각 보고회, 초청연수, 현지 협의 등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통역 사용

□ 공정보고 및 추진현황 회의

- 매월 말 기준으로 과업의 추진상황을 작성하여 용역진도보고서를 익월 5

일까지 제출 하여야 함

- 주간단위 계획/실적 보고 제출(이메일)
- 국토부 및 공사 요청시 추진현황 보고회의 참석

□ 제안서 발표회 시, 해외정부 대상 사전 영문 자료 준비 및 제공(이메일)

6. 과업성과품 제출

□ 착수보고(국내 수행 원칙)

-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수계, 보안각서 및 기타 필요 서류를 첨부한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
 - 착수보고는 과업수행자가 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과업 주요내용을 확인하고, 이에 대한 구체적인 수행방법, 과업참여자 명단, 과업수행조직의 편성 및 공정계획 등을 포함하여 보고해야 함
- 착수 보고회는 국내에서 수행(국문, 영문 보고PPT 준비)
 - * 착수보고회 일정은 '21.9.8~10 중 시행
 - * COVID-19로 국내 수행 제한시 감독관 및 현지정부와 협의하여 적정 보고회 추진방안 마련

□ 중간보고(국내 수행 원칙)

- 중간보고는 감독관과 보고일정을 협의하고 보고서 5부를 제출하여야 하며, 동 보고서에는 착수보고 시 확인한 주요내용에 대한 과업수행방법을 구체화하고, 검토한 내용의 잠정결론 및 세부내용이 포함되어야 함(국문, 영문)
 - 해당 사업의 현지 관련기관 협의를 위해 영문으로 작성한 중간보고 요약서 및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첨부하여야 함
- 중간보고회는 상대국 초청연수(역량강화 활동)와 연계하여 국내에서 수행(국문, 영문보고 PPT 준비)
 - * COVID-19로 초청연수 수행 제한시 감독관 및 상대국과 협의하여 적정 보고회 추진방안 마련

□ 최종보고(현지 수행 원칙)

- 최종보고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일정을 결정하고 조사연구한 최종 내용을 보고해야 함. 단, 최종보고에서 제안된 수정 내용을 감안하여 최종보고서를 작성해야 함(국문, 영문)
- 최종보고서는 본 제안요청서의 성과물작성 등을 고려하여 작성하며 30부를 제출하여야 함. 또한 최종보고서, 기타 참고자료 및 재무모델의 전자파일을 함께 제출하여야 함
 - 해당 사업의 현지 관련기관 협의를 위해 영문으로 작성한 최종보고 요약서 및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첨부하여야 함
 - (요약본) 우즈베키스탄의 현행 규정 및 양식을 준수하는 요약본 별도작성 제출(국·영문·필요시 러시아어 각 10부)
- 최종 보고회는 현지에서 수행(국문, 영문 보고PPT 준비)
 - * COVID-19로 현지 수행 제한 시 감독관 및 현지정부와 협의하여 적정 보고회 추진방안 마련

□ 수정보고서

- 과업수행자는 최종보고서 제출 후 6개월 이내에 시범사업의 추정수입 및 운영비 추정 등에 사용된 기초자료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본 변경사항을 반영한 수정보고서를 우리 공사의 검토를 받은 후 인쇄하여 10부를 제출하여야 하고, 이 때 수정보고서, 수정 참고자료, 수정 재무모델의 전자파일을 함께 제출하여야 함

7. 보안대책

- 과업책임자는 국토교통부보안업무시행규칙 제54조(용역업체에 대한 보안 대책)를 준수하여야 하며, 본 과업에 참여하는 자에 대하여 동 세칙에 의한 보안각서(별첨)를 제출받아 과업착수와 동시에 제출하여야 함
- 과업수행자는 보안사항의 누설과 관련 자료의 도난, 분실, 기타 손괴 등을 방지하고, 제반 보안사항의 조치를 강구 또는 감독하기 위하여 정부보안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, 자료 보관함은 별도 비치하되, 대외비와 일반자료보관함으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함

- 과업참여자의 교체 시에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유출을 방지하고,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함
- 과업참여자가 교체될 시는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보안규정 이행여부에 대하여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함
- 최종보고서 등 성과물(확정안 포함)은 감독관과 사전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대외비로 생산·관리하여야 함
- 과업수행 중 생산된 모든 자료 및 성과품은 우리 공사의 사전 승인 없이 타 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없음
- 대외비로 분류된 성과물을 발간하고자 할 때는 정부 비밀취급인가 업체를 이용하고 보안책임자가 입회하여야 하며, 성과품에는 발간근거 명시(업체명, 인가근거, 참여자, 발간일자) 및 원지, 폐지, 잉여분 회수 등 소각을 철저히 하여야 함
- 과업 내용상 외부에 유출될 경우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성과품 작성 시에는 참여 인원을 최소화하되, 정규직원에게 한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해야 함
- 과업수행 과정 중 각종 회의 시 배포될 자료에 본 과업내용이 포함될 때는 필요한 최소부문만 생산해야 함
- 과업수행자는 과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내용을 임의로 사용하여 국가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, 기타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짐
-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 수행과정에서 산출된 각종 자료에 대하여 보안 필요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우리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안관계 제 규정을 준수하고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야 함
- 과업내용 중 일부를 외국의 전문기술 및 지식을 활용하거나, 외부기관에 의뢰하여 과업을 수행할 경우에도 동일한 보안대책을 수립/시행하여야 함
- 성과품은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하여야 함